

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62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5. 22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5. 23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6. 10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읍·면리간 행정구역이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행정구역경계는 없어지고 새로운 지형지물(도로, 하천, 구거 등)이 조성됨에 따라 불합리한 읍·면리간 행정구역 경계를 재조정 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읍·면리간 경계변경(안 제2조 별표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거 읍면리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
- 경지정리 사업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형지물이 조성됨에 따라 불합리한 읍면리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
- 토지소유자 및 해당 읍면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견수렴과정 결과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※ 제71회 고성군의회(임시회) 상정·심의된 의안번호 제568호 『읍면행정 구역(경계선) 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』 과 관련임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입법예고에 따른 이의신청 등 민원은 없었는지
- 답 : 제71회 임시회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관계절차에 의거 추진하였으며, 별다른 민원은 없었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0. 6. 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